사 업 설 명 회

안전은 권리입니다

『모기업-협력업체』

#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 안내

2019. 2.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

## □ 정부정책 방향

[출처 :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]

**목표** 2022년까지 **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 50% 감축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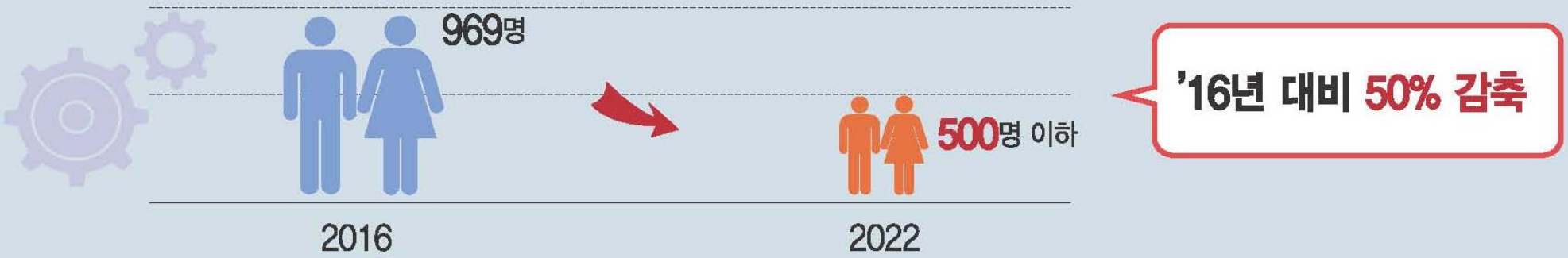


### 위험 주체별 역할 재정립과 책임 실천

주체별 역할을 재정립하고,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.

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 신설,
공공발주기관 우선 적용

안전관리 책임 장소 확대
(22개 → 원청관리下 모든장소)

노사가 함께 사업장 위험요인을 평가,
자체 개선

긴급대피, 작업중지요청제도
사용 활성화

# □ 정부정책 방향

[출처 :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]

##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

산재사망사고의 약 65%를 차지하는 고위험분야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.

건설

100대 건설사 산재감축 목표관리제,
반복 · 대형사고 발생 업체 전국현장 일제감독

기계 · 장비

인증 · 검사 강화,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,
현장 밀착관리

조선 · 화학

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→ 구조적개선,
고위험 화학공장 밀착관리

## 현장관리 · 감독 체계화, 안전 인프라 강화

대책이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, 안전 최우선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.

위반사항 적발 뿐만 아니라 사업장 안전보건시스템 구축까지 지원,
산업안전 감독관 증원('17년 448명 →'18년 561명)

안전기술 개발 → 제품화 → 사용지원

체험형 교육(5개소 신설), 최고경영자 인식 제고,
자치단체 노사 참여 캠페인 등

## 안전 우수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

안전 우수기업엔...

- 위험성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산재보험료 인하제도 확대
- 정책자금, R&D 등 중소기업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
- 원 · 하청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 시 인센티브 확대 등

## 안전관리 부실에는 확실한 책임을

안전부실로 인한 사고시에는...

- 사망사고 발생시 징역형에 하한형 도입, 법인 벌금형 가중
- 원청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제재 강화
- 안전관리 부실 건설사업주 입찰 및 영업불이익 강화 등

## □ 최근 산업재해 특징

❖ **대기업(원청)에서 소규모 사업장(하청)으로 아웃소싱 확대와 함께 위험의 외주화로 협력업체(하청)에서 대형사고[1]가 빈발하고 이슈(issue)[2]化**

1) 00반도체(16.4.30. 질식 사망3), 00화학공장(16.7.3. 폭발 사망6/부상1), 00조선(16년 화재 2건, 사망4/부상13)
00조선(17.5.1. 크레인붕괴 사망6/부상25), 00조선(17.8.20. 폭발 사망4), 000 포항(18.1.25. 질식 사망4) 등

2) 00물류센터(18.10.29. 트레일러에 부딪힘), 0000발전소(18.12.11. 컨베이어 끼임) 등

※ 하청근로자의 사망자 비율(%) : `14년 39.9 → `15년 42.3 → `16년 42.5

❖ **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재해 발생**

○ **소규모 사업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**

※ 50인 미만 사업장수 점유율 : 97.1%(`03년) → 98.1%(`17년)

○ **중.대규모와 소규모 사업장과의 재해 점유율 격차 확대**

※ 50인 미만 재해자수 점유율 : 69.1%(`03년) → 80.7%(`17년)

## □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부 개정

**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, 유해 · 위험작업 도급을 금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부를 개정하여 지난 1월 15일 공포**

### ♣ 주요내용

-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(제1조,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)
- 근로자에 대한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(제52조)
- 도금작업 등 유해·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(제58조)
-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(제63조 및 제65조제4항)
-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·제출 등(제110조 및 제112조 등)
- 법 위반에 관한 제재 강화(제167조)

**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은 2020.1.16.부터 시행됩니다.**

[ 예외 ]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 : 2021. 1. 16.부터 시행,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규정 : 2021. 1. 1.부터 시행

## □ 사업 목적

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한 협력업체를 위하여, 모기업 주도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고, 그에 따라 협력업체에 기술 · 재정적 지원을 추진함으로써,

-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 안전보건 격차해소
-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을 통한 자율 관리능력 향상
- 모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를 통해 협력업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

❖ <근거>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(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직무)
제29조(도급사업시의 안전 ·보건조치) 등 에 따른 모기업의 의무이행과 사회적 책임에 근거

# Ⅲ. 사업 절차 (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)

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

고용부단

대상사업장 선정 · 안내 (1,000개소이상)

사업설명회 개최

계획서 작성 제출
(신규 사업장 희망 시 컨설팅)

(접수: 3.4(월)~3.15(금))

계획서 심 사

(보완/승인 : ~3.29(금))

위험성평가 실시

(제출 : ~5.24(금))

개선계획서 제출

현장 기술지도 (50%)

(제출 : 9월말)

추진실적 제출

확인 기술지도 (100%)

등급평가
(A, B 등급)

사업장

## 1 사업대상 선정 (고용부, 공단)

□ 참여대상 : 50인 이상(사내협력 근로자 포함) 모기업과 그 협력업체

□ 대상업종 : 제조업, 전기업, 서비스업, 운수·창고업·통신업

□ 모기업 선정 기준

✓ ① 협력업체 중대재해 발생, 사고 다발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된 모기업
* 발전 관련 공기업, 한국마사회, 도시철도공사, 통신기업, 시멘트제조, 물류/택배, 항만하역 등

✓ ② 50인 이상 사업장 중 협력업체 다수 보유 모기업
* 고위험작업 협력업체를 다수 보유한 신규 참여사업장 우선 선정

✓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기업

✓ ④ '12~'18년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모기업

* **(선정기준 수립)** 고용노동부 본부(정책과) → (사업장 선정)고용노동지청- 공단 일선기관 협의

## 2 협력업체 참여 대상

□ 사내 협력업체 : 전체 참여

□ 사외 협력업체 : 자율 참여

※ 정비·보수 및 유해·위험물질 제조·사용 등 고위험작업을 하는 사외 협력업체는 반드시 참여

❖ 「유해 · 위험물질 제조 · 사용 사업장」 범위

① 공정안전보고서(PSM) 적용 관리대상물질(51종)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·취급·사용하여, PSM 비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장

②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고독성(발암성 • 생식세포 변이원성 • 생식독성) 물질(78종) 제조·사용 사업장

③ 그 밖의 최근 10년간 직업병 발생 유해물질 제조·사용 사업장

(삼산화안티몬, 시안화수소, 메틸알코올,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등)

# □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고독성(CMR) 물질(78종)

| 번호 | 화학물질명(한글) | 화학물질명(영어) | CAS No. |
|---|---|---|---|
| 1 | 펜타클로로페놀 | Pentachlorophenol | 87-86-5 |
| 2 | 크롬광 및 함유제제(열소성처리 경우만) | Chromite ore processing(Chromate), as Cr | 7440-47-3 |
| 3 | 니트로메탄 | Nitromethane | 75-52-5 |
| 4 | 니트로벤젠 | Nitrobenzene | 98-95-3 |
| 5 | p-니트로클로로벤젠 | p-Nitrochloro benzene | 100-00-5 |
| 6 | 디니트로톨루엔 | Dinitrotoluene | 25321-14-6 |
| 7 | 디메틸아닐린(아미노디메틸벤젠) | Dimethylaniline | 121-69-7 |
| 8 |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 | N,N-Dimethyl acetamide | 127-19-5 |
| 9 | 디메틸포름아미드 | Dimethylformamide | 68-12-2 |
| 10 | 디에탄올아민 | Diethanolamine | 111-42-2 |
| 11 | 1,4-디옥산 | 1,4-Dioxane(Diethylene dioxide) | 123-91-1 |
| 12 | 디클로로메탄 | Dichloromethane(Methylene chloride) | 75-09-2 |
| 13 | 디하이드록시벤젠 | Dihydroxybenzene(Hydroquinone) | 123-31-9 |
| 14 | 2-메톡시에탄올 | 2-Methoxyethanol(Methyl cellosolve) | 109-86-4 |
| 15 | 메틸렌비스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 | 4,4'-Methylenebis(phenyl diisocyanate) | 101-68-8 |
| 16 | 메틸이소부틸케톤 | Methyl isobutyl ketone(Hexone) | 108-10-1 |
| 17 | 메틸클로라이드 | Methyl chloride | 74-87-3 |
| 18 | 메틸n-부틸케톤 | Methyl n-butylketone(2-Hexanone) | 591-78-6 |
| 19 | 벤젠(중량비율 0.1% 이상) | Benzene | 71-43-2 |
| 20 | 1,3-부타디엔(중량비율 0.1% 이상) | 1,3-Butadiene | 106-99-0 |
| 21 | 1-브로모프로판(중량비율 0.3% 이상) | 1-Butanol(n-Butyl alcohol) | 106-94-5 |
| 22 | 2-브로모프로판(중량비율 0.3% 이상) | 2-Bromopropane | 75-26-3 |
| 23 | 브롬화메틸 | Methyl bromide | 74-83-9 |
| 24 | 비닐 아세테이트 | Vinyl acetate | 108-05-4 |
| 25 | 사염화탄소(중량비율 0.1% 이상) | Carbon tetrachloride(Tetrachloromethane) | 56-23-5 |
| 26 | 스티렌 | Styrene(Vinyl benzene. Phenylethylene) | 100-42-5 |
| 27 | 시클로헥사논 | Cyclohexanone | 108-94-1 |
| 28 | 아닐린(아미노벤젠)과 그 동족체 | Aniline & homologues | 62-53-3 |
| 29 | 아세트알데히드 | Acetaldehyde | 75-07-0 |
| 30 | 아크릴로니트릴 | Acrylonitrile | 107-13-1 |
| 31 | 아크릴아미드 | Acrylamide | 79-06-1 |
| 32 | 알릴글리시딜에테르 | Allylglycidyl ether(AGE) | 106-92-3 |
| 33 | 에틸벤젠 | Ethyl benzene | 100-41-4 |
| 34 | 에틸아크릴레이트 | Ethyl acrylate | 140-88-5 |
| 35 | 2-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| 2-Methoxyethyl acetate | 110-49-6 |
| 36 | 2-에톡시에탄올 | 2-ethoxyethanol(ethyl cellosolve) | 110-80-5 |
| 37 | 2-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| 2-Ethoxyethyl acetate | 111-15-9 |
| 38 | 2-부톡시에탄올 | 2-Butoxyethanol, EGBE | 111-76-2 |
| 39 |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아세테이트 | Ethylene glycol mono butyl acetate | 112-07-2 |

| 번호 | 화학물질명(한글) | 화학물질명(영어) | CAS No. |
|---|---|---|---|
| 40 | 에틸렌이민 | Ethylenimine | 151-56-4 |
| 41 | 2,3-에폭시-1-프로판올 | 2,3-Epoxy-1-propanol(Glycidol) | 556-52-5 |
| 42 | 1,2-에폭시프로판 | 1,2-Epoxypropane | 75-56-9 |
| 43 | 에피클로로하이드린(중량비율 0.1% 이상) | Epichlorohydrin | 106-89-8 |
| 44 | 요오드화메틸 | Methyl iodide | 74-88-4 |
| 45 | 이황화탄소 | Carbon disulfide | 75-15-0 |
| 46 | 클로로벤젠 | Chlorobenzene | 108-90-7 |
| 47 | 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 | 1,1,2,2-Tetrachloroethane | 79-34-5 |
| 48 | 1,1,2-트리클로로에탄 | 1,1,2-Trichloroethane | 79-00-5 |
| 49 | 1,2,3-트리클로로프로판 | 1,2,3-Trichloropropane | 96-18-4 |
| 50 | 테트라하이드로퓨란 | Tetrahydrofuran | 109-99-9 |
| 51 | 톨루엔 | Toluene(Toluol) | 108-88-3 |
| 52 | 톨루엔-2,4-디이소시아네이트 | Toluene-2,4-Diisocyanate(TDI) | 584-84-9 |
| 53 | 톨루엔-2,6-디이소시아네이트 | Toluene-2,6-diisocyanate | 91-08-7 |
| 54 | 트리클로로메탄 | Chloroform(Trichloromethane) | 67-66-3 |
| 55 | 트리클로로에틸렌(중량비율 0.1% 이상) | Trichloroethylene | 79-01-6 |
| 56 | 퍼클로로에틸렌 | Tetrachloroethylene(Perchloroethylene) | 127-18-4 |
| 57 | 페놀(중량비율 0.3% 이상) | Phenol | 108-95-2 |
| 58 | 포름알데히드(중량비율 0.1% 이상) | Formaldehyde | 50-00-0 |
| 59 | 스토다드솔벤트 | Stoddard solvent | 8052-41-3 |
| 60 | 프로필렌이민 | Propylene imine | 75-55-8 |
| 61 | 피리딘 | Pyridine | 110-86-1 |
| 62 | 하이드라진 | Hydrazine | 302-01-2 |
| 63 | 헥산(n-헥산) | n-Hexane | 110-54-3 |
| 64 | 황산디메틸 | Dimethyl sulfate | 77-78-1 |
| 65 | 1,2-디클로로에탄 | 1,2-Dichloroethane | 107-06-2 |
| 66 | 납 및 그 무기화합물(중량비율 0.3% 이상) | Lead and Inorganic compounds, as Pb | 7439-92-1 |
| 67 | 니켈 및 그 화합물(중량비율 0.1% 이상) | Nickel(Elementall) | 7440-02-0 |
| 68 | 수은 및 그 화합물 | Mercury(Alkyl compounds) | 7439-97-6 |
| 69 | 이산화티타늄 | Titanium dioxide | 13463-67-7 |
| 70 | 카드뮴 및 그 화합물(중량비율 0.1% 이상) | Cadmiumandcompounds, as Cd(Respirablefraction) | 7440-43-9 |
| 71 |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| Cobalt(Metal dust & fume) | 7440-48-4 |
| 72 | 오산화바나듐 | Vanadium pentoxide(Respirable dust or fume) | 1314-62-1 |
| 73 | 과산화수소 | Hydrogen peroxide | 7722-84-1 |
| 74 | 트리클로로아세트산(삼염화초산) | Trichloroacetic acid | 76-03-9 |
| 75 | 황산(중량비율 0.1% 이상) | Sulfuric acid | 7664-93-9 |
| 76 | 산화에틸렌(중량비율 0.1% 이상) | Ethylene oxide | 75-21-8 |
| 77 | 일산화탄소 | Carbon monoxide | 630-08-0 |
| 78 | 염화메틸렌 | Methylene chloride | 75-09-2 |

## □ 협력 차수별 참여·지원 방안

① **모기업이 사외 협력업체와 함께**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한 후, 그에 따른 직·간접 지원활동 전개

② **모기업은** 자체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하위 협력업체로 전달·이행확인 관련 사항을 방침·규정화하여 다중이 알 수 있도록 게시·전달

③ **1차 협력업체는** 하위 협력업체에 대해서 모기업의 방침·규정을 준용하여 동일한 활동 추진

## 3 프로그램 참여신청 [사업장 → 공단]

□ 제 출 기 간 : 3.4(월) ~ 3.15(금), 2주간

□ 제 출 처 : 모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

□ 제 출 서 류

❖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

- [첨부1] 사업장 현황 조사표
- [첨부2]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 현황
  * 사내 협력업체는 전체, 사외 협력업체 중 고위험작업 업체는 모두 참여
  * 사업장관리번호, 사업개시번호 정확히 기재 요망
- [첨부3]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*
  * 신규 참여사업장은 희망 시 작성방법 컨설팅 지원
- [첨부4]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

# Ⅳ. 세부추진 절차 (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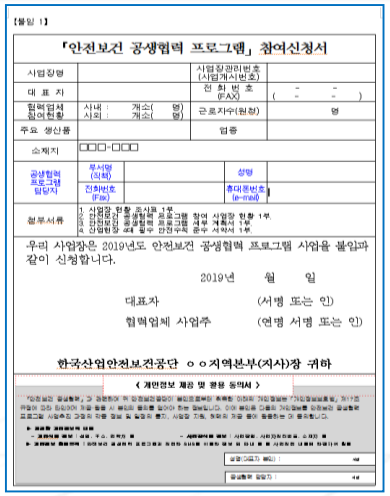
「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」 참여신청서

우리 사업장은 2019년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을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.

2019년 월 일

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협력업체 사업주 (연명 서명 또는 인)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귀하

[신 청 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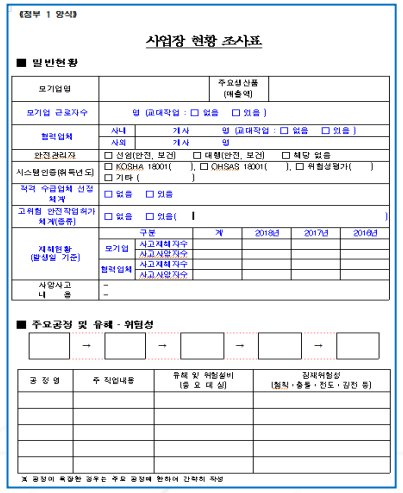
사업장 현황 조사표

■ 일반현황

■ 주요공정 및 유해 · 위험성

[첨부1 : 현황조사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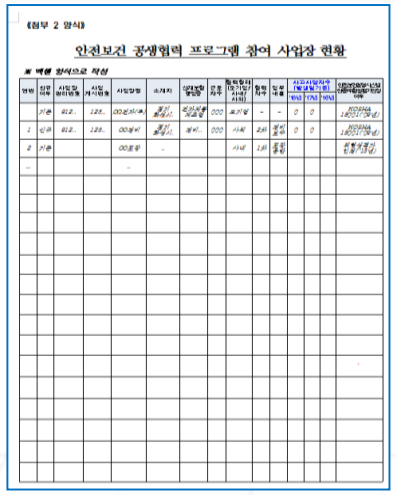
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 현황

[첨부2 : 참여업체 현황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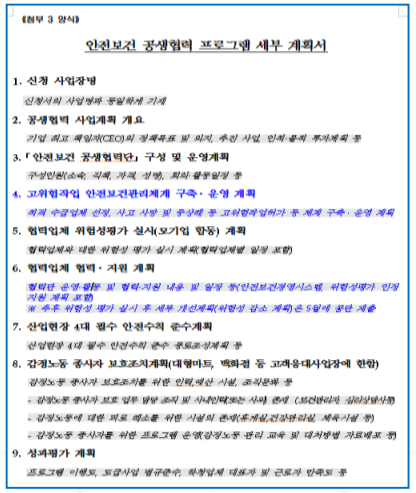
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

1. 신청 사업장명
2. 공생협력 사업계획 개요
3. 「안전보건 공생협력단」 구성 및 운영계획
4. 고위험작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· 운영 계획
5.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시(모기업 합동) 계획
6. 협력업체 협력 · 지원 계획
7.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계획
8.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조치계획(대형마트, 백화점 등 고객응대사업장에 한함)
9. 성과평가 계획

[첨부3 : 세부계획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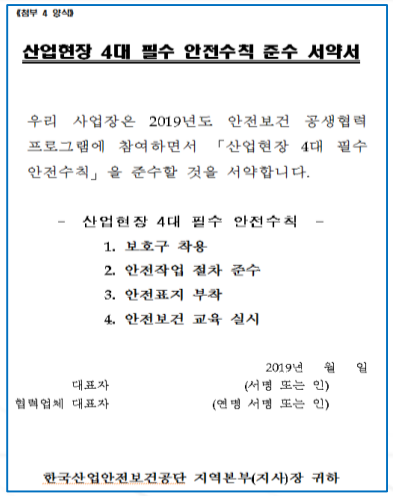
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

우리 사업장은 2019년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「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」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-

1. 보호구 착용
2. 안전작업 절차 준수
3. 안전표지 부착
4. 안전보건 교육 실시

2019년 월 일

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협력업체 대표자 (연명 서명 또는 인)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(지사)장 귀하

[첨부4 : 안전수칙 서약서]

## □ 프로그램 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

- ✓ 안전보건 공생협력단 구성·운영 계획
- ✓ 참여대상 협력업체 명단(협력업체 자체선정계획 포함)
- ✓ 고위험작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운영계획
- ✓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 실시 계획·방법(위험성평가 인정, 'KOSHA 18001 인증 지원계획 포함
- ✓ 위험성평가 결과 등에 따른 협력업체 지원계획
- ✓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이행 계획
- ✓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계획(대형마트, 백화점 등 고객응대사업장)
- ✓ 프로그램(활동) 평가 계획 등

## 4 세부계획 수립 방문 컨설팅 [공단 → 사업장]

□ 대 상 : ´19년 신규참여 사업장 중 희망 사업장

□ 시 기 : 3.4(금)~ 프로그램 심사 이전일(관할 지역본부/지사에 문의)

□ 컨설팅 내용

✓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계획서 작성방법
✓ 기타 사항

## 5 프로그램 심사 · 승인 (심사위원회)

□ 심사 · 승인 : 3. 29(금) 까지 완료

□ 심사위원회 : 지방고용노동관서, 공단, 외부전문가로 구성(5~8명)

□ 심 사 항 목

✓ 모기업의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의지(비전, 인적·물적 추진계획, 방침 및 규정의 마련)

✓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(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산재취약사업장 모두 선정, 고위험작업 협력업체 전부 참여)

✓ 협력단 구성의 적정성(책임자급을 포함하여 조직구성 및 사장단에 보고하는 체계 구축)

✓ 협력사업 계획의 효과성(적격 수급업체 선정, 고위험작업 작업허가 체계,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향상계획)

✓ 협력단 활동의 적정성(협력업체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활동계획과 협의회의 정기적 개최)

✓ 협력사업 투자의 적정성(위험성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)

✓ 성과평가 계획의 적정성(계획대비 이행도 측정, 적용법규 준수 여부, 만족도 조사 등)

# Ⅳ. 세부추진 절차 (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)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

##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심사표

▣ 사업장명(모기업명):

| 평가항목 | 평 가 지 표(판단 기준) | 판정 |
|---|---|---|
| 모기업의 공생협력 추진의지 | □ 사업장이 공생협력프로그램 추진에 의지가 있는가?<br>✓우수: 사업주가 공생협력프로그램 추진에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임.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계획에 과감한 인적·물적 투자 계획을 담고 있으며, 공생협력 원칙 등과 그 이행·확인의 내용을 포함한 방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<br>✓보통: 사업주가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, 적극적이지 않으며,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계획, 방침 및 규정이 다소 미비함<br>✓미흡: 사업주가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모르고 있으며, 추진계획 및 모기업 안전보건 관리 체계, 방침 및 규정이 미흡함 | □ 우수<br>□ 보통<br>□ 미흡 |
|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 | □ 공생협력이 필요한 협력업체를 선정하였나?<br>✓우수: 사내·외*를 포함하여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산재취약 사업장을 모두 선정<br>✓보통: 자체 선정기준이 없이 사내·외 협력업체를 선정<br>✓미흡: 고위험 사업장을 누락하는 등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협력업체 중심으로만 선정<br>* 정비·보수, 유해화학물질 제조·사용 등 고위험 사의 협력업체 포함 여부 확인 | □ 우수<br>□ 보통<br>□ 미흡 |
| 협력단 구성의 적정성 | □ 협력단의 구성이 적정한가?<br>✓우수: 책임자급으로 구성하고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지원을 위한 적정한 조직을 구성(외부전문가에 의한 협력업체 지원 포함)하고 활동 결과를 사장단에 보고하는 체계가 구축됨<br>✓보통: 책임자급(공장장 이상)으로 협력단이 구성되어 있으나,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지원 조직(외부전문가에 의한 협력업체 지원 포함) 구성이 미비함<br>✓미흡: 안전관리부서 단위 수준으로만 구성·운영됨 | □ 우수<br>□ 보통<br>□ 미흡 |
| 협력사업 계획의 효과성 | □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향상에 기여하도록 수립하였는가?<br>✓우수: 적격 수급업체 선정, 사고 사망 및 중상해 등 다발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체계,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대한 구축 및 운영계획이 협력업체별 공정·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·관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수립됨(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, 위험성평가 인정 계획 포함)<br>✓보통: 전체적인 활동계획은 작성되어 있으나, 업체별 등 구체적인 계획 미비<br>✓미흡: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협력사업 중심으로 작성 | □ 우수<br>□ 보통<br>□ 미흡 |
| 협력단 활동의 적정성 | □ 협력단의 공생협력 추진 활동 계획이 적극적인가?<br>✓우수: 지하발생 수준, 위험공정 등 업체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활동(위험성평가·모니터링·평가 등) 계획과 협의회 정기적 개최 등 계획이 적극적임<br>✓보통: 전체적인 활동계획은 작성되어 있으나, 업체별 등 구체적인 계획 미비<br>✓미흡: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활동 계획만 작성 | □ 우수<br>□ 보통<br>□ 미흡 |
| 협력사업 투자의 적정성 | □ 협력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적정한지?<br>✓우수: 평가에 따른 협력업체별 또는 항목별 등 구체적인 예산 확보·집행 계획 작성<br>✓보통: 전체적인 예산계획은 있으나, 협력업체별 또는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책정은 결여<br>✓미흡: 전체적인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 없음 | □ 우수<br>□ 보통<br>□ 미흡 |
| 프로그램 성과평가 | □ 공생협력 프로그램 성과평가 계획이 적정한지?<br>✓우수: 당초 계획대비 프로그램 성실 이행도 측정, 적용범위 준수 여부, 하청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등 포함<br>✓보통: 전체적인 활동계획은 작성되어 있으나, 업체별 등 구체적인 계획 미비<br>✓미흡: 단순 재해감소 효과만 평가 | □ 우수<br>□ 보통<br>□ 미흡 |
| 종합의견 | | |

※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전 심사결과 '보통', '미흡'항목을 중심으로 심사한 후, 위원장이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'판정'을 조정하거나 원안을 확정하고, '종합의견'란에는 '보완요구' 또는 '불승인' 관련 핵심내용을 기재

## □ 심사기준

- **승 인**(미흡 0개)
- **보 완**(미흡 1개~3개)

* 10일 이내 계획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 → 공단은 검토 후 승인

- **불승인**(미흡 4개 이상)

## 6 위험성평가 실시 (모기업, 협력업체)

### □ 위험성평가 추진 주체

✓ 위험성평가는 **모기업(원청)·협력업체(하청)가 공동으로 수행**

✓ 모기업•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간 책임주체가 불분명하거나, 공용의 장소, 혼재 작업 구역 등은 **원청이 주도적으로 추진**

✓ 외주업체에 의한 정비 • 보수작업 등과 같이 추진 주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**원청•외주업체 또는 해당 공정 하청•외주업체가 공동 추진**

✓ **모기업은** 협력업체별 위험성평가,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하고 **협력업체별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 수립하고 개선계획서 제출**

## 7 개선계획서 제출 [사업장 → 공단]

□ 제출기간 : 5. 24(금) 까지

□ 제 출 처 : 모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

□ 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

✓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시 개요(협력업체별 실시 일정, 방법 등 실시현황)

✓ 위험성평가*를 통해 도출된 유해·위험요인 및 위험성 개선(감소) 대책과 그 일정

* 보수·정비 작업, 개·보수공사 등 비정형 작업을 포함하여 실시

✓ 위험성 개선(감소)를 위한 투자 예산(예산을 부담하는 주체 명시)

✓ 위험성평가 인정,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 18001) 인증 지원계획

✓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이행계획 등

## 8 현장 기술지도 (공단 → 사업장)

□ **지도기간 : 6월~8월**

□ **지도대상 : 참여 모기업의 50%**

✓ '19년 신규 참여사업장 및 '18년 B등급 사업장 중 평가점수 하위 사업장

□ **지도내용(제출된 개선계획서를 토대로 기술지도 실시)**

✓ 공생협력 프로그램 취지 설명 및 혜택 안내
✓ 모기업 및 협력업체 간 안전보건역할 구분 지도
✓ 일부 공정 위험성평가 시범 평가 등 컨설팅 실시
✓ KOSHA 18001 및 위험성평가 등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도
✓ 수차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, 연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·운영 지도
✓ 사고사망 다발 5대 작업·기계 및 장소 중점지도 및 핵심 요구조치※

## 8 현장 기술지도 (공단 → 사업장)

**※ 중점 지도대상 및 핵심 요구조치**(사고사망 다발 5대 작업·기계 및 장소)

(공통조치) 사전 위험성평가 ⇨ 정비.보수를 포함한 안전작업계획서 작성.이행, 고위험은 안전작업허가제 운영

**❶ 보수.정비 작업, 개.보수공사 등 비정형작업**

⇨ 적격 수급업체(협력업체) 선정체계*, 작업허가제(작업 전 ~ 시운전단계) 구축 및 운영

*「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(2018-안전-395)」참조

**❷ <충돌> 지게차**

⇨ 자격자 조종, 안전작업계획서(안전통로 확보, 출입금지구역 구획 등) 작성 및 이행

**❸ <끼임> 성형기, 로봇, 적재기, 컨베이어, 분쇄.파쇄기, 혼합.교반기, 다이캐스팅기 등**

⇨ **(정비.보수 작업)** 전원차단, 전원 투입부에 잠금장치 또는 꼬리표 설치, **(정상작업)** 방호시설.안전장치 구비

**❹ <추락> 비계.사다리 사용작업**

⇨ 사다리 목적 외 사용금지, 적정 작업대.설비.보호구 사용

**❺ <질식.화재.폭발> 밀폐공간 도장.용접.용단작업, 하수처리시설.맨홀.화학설비.반응기 내부작업, 콘크리트 양생작업**

⇨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및 출입허가제 이행, 환기.가스농도측정 설비 구비.활용 등

## 9 추진실적 제출 (사업장 → 공단)

□ 제출기간 : 9월말까지

□ 제 출 처 : 모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

□ 제 출 내 용

✓ 모기업 최고경영자의 추진의지 및 노력, 공생협력 규정

✓ 적격 수급업체 선정, 사고사망 및 중상해 다발 등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등 방침규정의 수립 및 전달체계

✓ 공생협력단 조직, 활동계획 및 실적, 위험성평가 수행조직 및 방법, 예산책정 등(* 정비보수, 공사 등 고위험작업 업체 선정 여부 등)

✓ 위험성평가 계획, 교육실적, 감소대책에 따른 개선내용

✓ 공생협력 프로그램 계획대비 이행 실적

✓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지키기 추진실적(교육, 보호구 지급 등)

✓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위험성평가 인정 실적

✓ 참여 협력업체의 만족도 조사(대표자 및 근로자) 결과

✓ 자체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등

## 10 확인 기술지도 (공단 → 사업장)

□ 지도 기간 : 10월 ~ 11월

□ 지도 대상 : '19년 프로그램 참여사업장 전체(100%)

□ 지도(모니터링) 내용

✓ 현장 기술지도 시 도출된 문제점 개선여부 확인
✓ 개선계획서의 이행여부 확인
✓ 추진실적에 대한 현장 확인·평가 및 강평 실시
✓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 등

□ 결과

✓ 현장 평가점수가 90점 미만인 사업장은 B 등급으로 확정
✓ 현장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사업장은 상위 평가위원회에 상정

## 11 등급평가 [평가위원회]

□ **평가기간 : 11월말~12월 10일(화)**

□ **심사방법 : 평가위원회 개최**

- 지역본부는 관할 지사에서 상정된 보고서를 포함하여 상위 평가위원회 개최
- 위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, 공단,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

□ **평가대상 :** 현장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, 확인기술지도 보고서

□ **등급구분 :** 평가점수에 따라 A등급(90점 이상) 또는 B등급(90점 미만)으로 구분, A등급 중 상위 10%는 S등급 부여

□ **평가 지표 및 기준(안)** ※ 평가 지표 및 기준은 9월에 확정하여 시달 예정

**[모기업 부문] 10점**

✓ 공생협력 추진의지(10%)

**[모기업 , 협력업체 공통 부문] 50점**

✓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(20%) ✓ 위험성평가 실행수준(20%) ✓ 공생협력 프로그램 성과평가(10%)

**[협력업체 부문] 40점**

✓ 협력업체 자율안전보건 실행 수준(16%) ✓ 협력업체 재해발생 수준(20%) ✓ 모기업과 재해 격차 완화 정도(4%)

## 세부 평가지표 및 기준(안)

### □ 공생협력 추진의지(10%)

- 공생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모기업의 사회적 책임인식 수준

### □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(20%)

- 공생협력 방침 · 규정의 수립 · 시행, 방침의 전달 · 이행확인 체계, 적격 수급업체 선정 체계, 고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체계
- 공생협력단 구성 및 활동의 적정성
  - ✓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
  - ✓ 협력단 구성의 적정성
  - ✓ 협력단 활동의 적정성
  - ✓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지원 계획 수립·이행
- 공생협력 예산 편성 · 집행의 적정성

## □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(20%)

- **위험성평가 계획(P)**
  - ✓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
  - ✓ 위험성평가 수행조직의 적정성
  - ✓ 위험성평가 대상공정, 작업의 분류에 필요한 정보 수집·활용
- **위험성평가 이행(D)**
  - ✓ 위험성평가관련 교육 실시 여부
  - ✓ 유해·위험요인 파악
  - ✓ 위험성 크기 추정, 결정,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
- **위험성평가 이행 확인(C)**
- **지속적 개선(A)**
- **기록 · 관리**

# Ⅳ. 세부추진 절차 [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]

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

## □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결과 평가(10%)

- **공생협력 프로그램 계획 대비 이행도**
- **도급관련 법규의 준수(산안법 제18조, 제20조, 제29조 등)**
- **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노력도**
- **만족도 조사 및 환류**
  - ✓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
  - ✓ 협력업체 개선요구 사항 반영 수준

## □ 협력업체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발생 수준(40%)

- **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(16%)**
  - ✓ 참여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인정(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포함) 획득비율
- **재해발생 수준 (20%)**
  - ✓ 참여 협력업체의 전년대비 재해율감소율
  - ✓ 참여 협력업체의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여부
- **모기업과 재해 격차 완화 정도(4%)**
  - ✓ 모기업·협력업체 안전보건격차 완화율

# V. 등급관리 · 혜택 [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]

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

| 평가등급 | 평가등급별 혜택 | 적용 시기 | 적용 대상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모기업 | 협력업체 |
| S등급 (상위 10%) | 정기감독 일부 유예*<br>정부포상 우대<br>KOSHA 18001 사후.연장심사비 1/2감면<br>* 자체감독 대상 선정 시 유예<br>* 단,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감독이 필요한 경우 감독 대상에 포함 | 참여 다음년도 | ○ | ○ |
| A등급 | 정부포상(산재예방 유공) 우대<br>KOSHA 18001 사후.연장심사비 1/2감면*<br>* 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 별표5 참조 | 참여 다음년도 | ○ | ○ |
| 모든 등급 | KOSHA 18001 컨설팅비용 우선지원 (50인 미만)<br>* KOSHA 18001 컨설팅비용 지원업무 처리지침 제3조 및 제7조 참조(전문기술 2016-05) | 수시 | × | ○ |
| | KOSHA 18001 실태심사비 면제 | 참여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(참여 승인 전까지) | × | ○ |
| | 클린사업 재정 우선지원<br>산재예방시설 융자 우선지원 | 참여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<br>참여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 | × | ○ |

※ 비고 : 절대평가 결과 90점 이상은 A등급 또는 S등급, 90점 미만은 B등급

# Ⅵ. 우수사례 발표대회 (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)

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

## □ 발표대회 개요

- 개최시기 : 7월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 행사 시
- 장　　소 : COEX(서울)
- 참가대상 :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(모기업)
- 시상내역

| 구 분 | 훈 격 | 사업장수 | | 시상내역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제조 분야 | 서비스 분야 | |
| 대 상 | 고용노동부 장관상 | 1 | 1 | 상장 및 상금 (각 200만원) |
| 최우수상 | 공단 이사장상 | 1 | 1 | 상장 및 상금 (각 100만원) |
| 우수상 | 공단 이사장상 | 3 | 3 | 상장 및 상금 (각 50만원) |

* 발표대회 세부일정 확정 시,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및 사업장에 안내 예정

## □ 위험성평가 인정제도

- 대상 : 상시 근로자수 100명[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(토목공사는 150억원)] 미만 사업장
- 신청 :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(http://kras.kosha.or.kr)에서 신청
- 업무처리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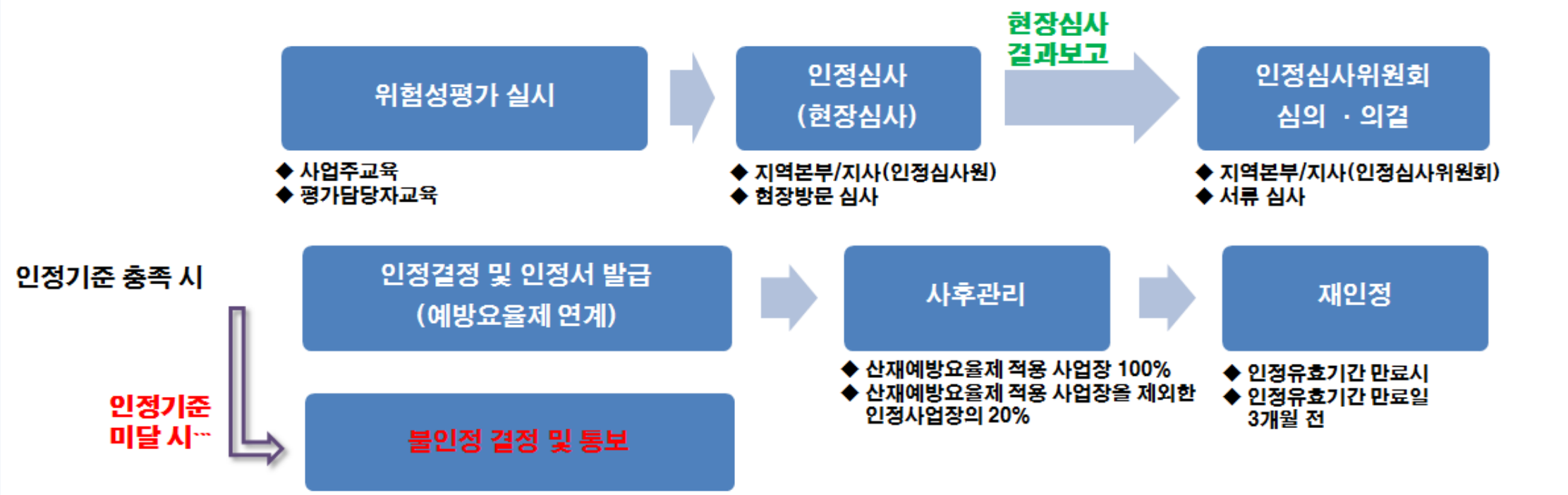

## □ 산재예방요율제

- **개념 :** 안전보건활동 우수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율 인하
- **적용대상 :**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(보험료 징수법)

  * 고용노동부에서 '보험료 징수법 시행령' 개정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업종 확대 등을 반영한 고시개정 준비 중

- **적용방법**
  - ✓ **보험료 할인율 :** 위험성평가 인정 20%, 요율제 사업주 교육 10%
    ※ 위험성평가인정과 사업주교육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 적용.
  - ✓ **인정 유효기간 :** 위험성평가 3년, 요율제 사업주 교육 1년
  - ✓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 인하
  - ✓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
- **인정취소 :**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(고용부)
- **업무처리절차**

  산재예방요율의 신청(사업주) → 재해예방활동 수행(사업주) → 재해예방활동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(안전보건공단)→보험요율 반영(근로복지공단)

# □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· 제출 제도

## 제출대상

다음의 "대상 업종 사업장"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"5개 설비 보유사업장"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

### ❶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개 업종으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 경우

| 업종코드 | 표준산업분류(중분류) | 업종코드 | 표준산업분류(중분류) |
|---|---|---|---|
| 10*** | 식료품 제조업 | 261** | 반도체 제조업 |
| 16*** |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| 262** | 전자부품 제조업 |
| 20*** |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| 29***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
| 22*** |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30*** |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
| 23*** |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32*** | 가구 제조업 |
| 24*** | 1차 금속 제조업 | 33*** | 기타 제품 제조업 |
| 25*** |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: 기계 및 가구 제외 | - | - |

### ❷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 경우

1) 용해로(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) 2) 화학설비 3) 건조설비 4) 가스집합용접장치
5) 허가·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『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』

※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**2017-60**호 제**3**조**(**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**)** 참조

# □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· 제출 제도

## 제출 및 안내 문의처

**[제 출 처]**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

**[제출서류]** 신청양식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별지 제25호 서식,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2부 (1부는 가급적 전자문서로 제출)

**[제출시기]** (작업 시작 15일 전까지)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설치·이전·변경의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15일 전

**[안내문의]**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(공단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)

- 공단 홈페이지(kosha.or.kr) ▶ 사업안내/신청 ▶ 산업안전 ▶ 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▶ 사업안내

## 심사·확인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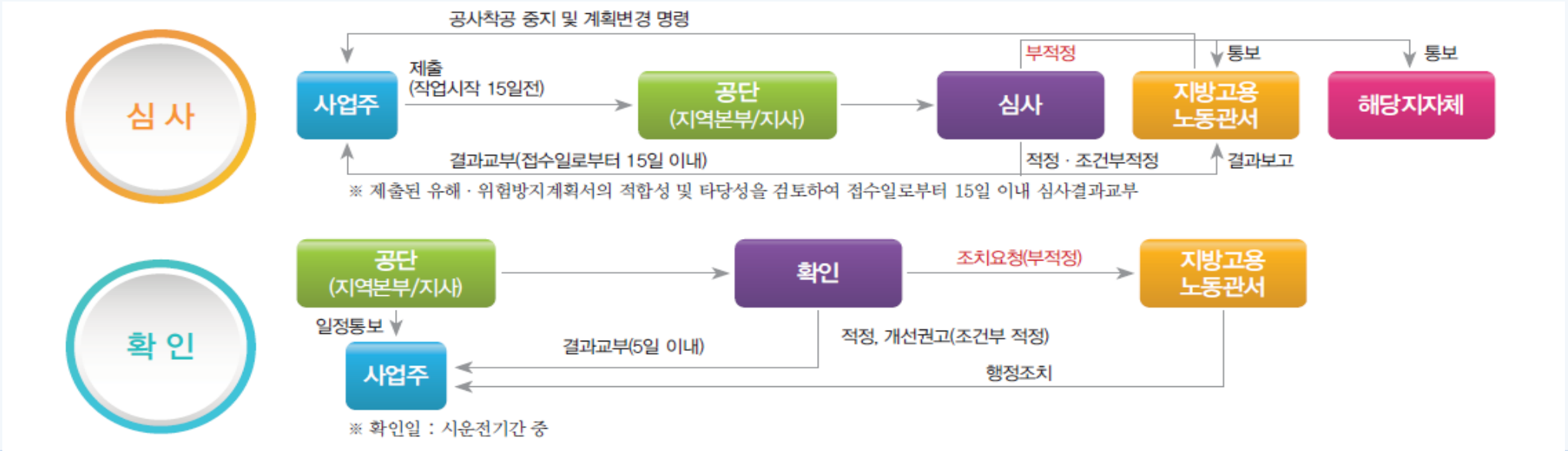

# □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및 기준(안)

## B.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

### 1. 방침·규정의 수립·전달·확인 체계

| 구 분 | 우수 | 보통 | 미흡 |
|---|---|---|---|
| 2. 적격 수급업체 선정 체계 | *3* | *1.5* | *0* |

① 우수(3): 수급업체(협력업체) 선정을 위한'안전수준평가'기준이 있고 입찰 시'공지'하고 있으며 평가항목*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음

② 보통(1.5): '안전수준평가'기준은 있으나 입찰 시 공지하지 않거나 안전수준평가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음

③ 미흡(0): '안전수준평가' 기준이 없음

## 의견수렴

"수정 또는 추가 반영할 사항 등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# □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및 기준(안)

## B.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

### 1. 방침·규정의 수립·전달·확인 체계

| 구 분 | 우수 | 보통 | 미흡 |
|---|---|---|---|
| 3. 고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체계 | *3* | *1.5* | *0* |

① 우수(3): '안전작업허가' 지침이 있고 허가서 '발급', '승인' 및 작업을 '입회' 하고 있으며, 작업 후에는 해당 작업현장에 게시하였던 허가서를 '회수' 및 '보존' 하고 있음

**※ 고위험작업이 없는 사업장은 '작업지침' , '작업계획'등 안전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준용하여 평가**

② 보통(1.5): '안전작업허가' 지침은 있으나 지침 또는 허가서가 구체적이지 않음

③ 미흡(0): 지침 또는 허가서가 없음

## 의견수렴

"수정 또는 추가 반영할 사항 등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# □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및 기준(안)

## ● E. 협력업체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발생 수준

### 2. 협력업체 재해발생 수준

| 구 분 | 우수 | 보통 | 미흡 |
|---|---|---|---|
| 3. 모기업·협력업체 안전보건격차* 완화율** | *4* | *2* | 0 |

① 우수(4): 전년동기 대비 모기업·협력업체 안전보건격차 10% 이상 감소

② 보통(2): 전년동기 대비 모기업·협력업체 안전보건격차 완화율*이 0% 이상 10% 미만 감소

③ 미흡(0) : 전년동기 대비 모기업·협력업체 안전보건격차 증가

* 안전보건격차 = (협력업체 사고사망만인율 ÷ 모기업 사고사망만인율) + (협력업체 사고재해율 ÷ 모기업 사고재해율)

** 완화율 = (당해년도 안전보건격차 – 전년도 안전보건격차) ÷ 전년도 안전보건격차 × 100

※ (적용 재해) 전년도 또는 평가년도의 사고사망 및 근로손실일수가 90일 이상인 업무상 사고재해
※ (적용 통계) 11월 중 공단 ERP에서 확인되는 확정통계 적용(발생일 기준)

## ● 의견수렴

"수정 또는 추가 반영할 사항 등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안전은 권리입니다

#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사업장이
#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동반성장을 이끌어 갑니다.

## 감사합니다 !!!